

대법원 2014. 12. 22 선고 2014다229016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 [공2015상, 165]

판 시 사 항

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,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상소기간

참 조 조 문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,제4항, 민법 제157조, 민사소송법 제170조, 제396조, 제425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14. 12. 22 선고 2014다22901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2.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관리인 원고

【피고,피상고인】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
【원심판결】 [서울고법 2014.9.23. 선고 2014나2009234판결](#)

주 문

상고장을 각하한다.

이 유

1. ‘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’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(제3항),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,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(제4항)고 규정하고, [민법 제157조](#)는 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,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며, [민사소송법 제170조](#)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, 상소기간은 [민법 제157조 단서](#)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로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.

2.기록에 의하면,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판결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이 2014.9.24.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 상고인에게 통지되었으나,그로부터 1주 이내에 상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,상고인은 2014.10.16.이 되어서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,원심판결문의 상고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시기는 전자우편 등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2014.10.2.의 오전 영시가 되고,상고기간은 2014.10.2.당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2014.10.15.만료하므로,2014.10.16.제출된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.

3.그러므로 [민사소송법 제425조](#), [제402조 제2항](#)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기로하여,주문과 같이 명령한다.

대법관 민일영(재판장)